

고용주: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불일치 통지서에 관해 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내용

“SSA 불일치” 통지서란?

공식적으로 “고용주 정정 요청”(Employer Correction Request) 고지문이라 불리는 SSA 불일치 통지서는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 SSA가 사회보장 혜택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고용인의 정확한 소득 내역 기록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고용주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교육 목적의 편지입니다. 이 통지서는 고용인의 이름 및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에 대한 보고 내용이 SSA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지난 몇 년간 SSA는 이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2019년 3월에 이를 재개했습니다.

SSA 불일치 통지서를 받을 경우 고용주 또는 고용인에 의한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이유로 인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오자, 오키 또는 보고되지 않은 이름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SSA 통지서에 표시되는 근거 내용: “본 통지서가 귀하(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의도적으로 고용인의 이름 또는 SSN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¹

SSA 불일치 통지서를 받을 경우 고용인이 불법체류자이거나 노동허가 없이 일한다는 것을 나타내나요?

아닙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 이유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여 SSA가 불일치 통지서를 발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SSA 통지서에 표시되는 근거 내용: “본 통지서가 귀하가 채용한 고용인의 노동 허가 또는 이민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도 고용주가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거명된 고용인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²

고용주가 불일치 통지서를 받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불일치 통지서는 고용주가 기록을 검토하고, 실수로 기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정정한 내용을 SSA에 통보하여 고용인의 임금이 SSA 기록에 정확하게 게시되고 고용인이 적절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고용주는 통지서 사본을 고용인에게 제공하여 SSA에 등록된 본인 정보가 정확한지 직접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SSA 웹사이트(<https://www.ssa.gov/employer/notices.html>)를 통해 샘플 고지문, 단계별 설명 및 FAQ 등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A 통지서에 표시되는 근거 내용: “귀하(고용주)는 고용인의 SSN 또는 이름이 SSA 기록과 다르다고 해서 권고사직, 정직, 해고 또는 차별행위 등 해당 고용인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60일 이내에 정정내용을 통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SSA는 불일치 통지서의 목적이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용주에게 알리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¹ 사회보장 관리국 은퇴자, 유가족 및 장애인 보험 고용주 정정 요청에 대한 샘플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sa.gov/employer/notices/EmployerCorrectionRequest.pdf>

² □□□, □□/□□□□□□ “□□□”□ □□ □□ □□□(FAQ),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t/legacy/2010/12/29/FAQs.pdf>

추가로 SSA는 사법집행기관이 아니며 6 월 초 의회의 공식 확인을 통해 "고용주가 [불일치] 통지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SSA와 연관된 어떠한 결과도 없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³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SSA 는 고용주 및 고용인의 기록이 다른 정부기관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나요?

SSA에 따르면 불일치 통지서에 있는 자료는 연방세에 관한 정보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법] 제 6103 조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SSA가 다른 정부기관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⁴ SSA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대리 기관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IRS와 불일치 정보를 공유합니다.

고용주 및 고용인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변호인 또는 업계 관련단체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직장 내 담당직원과 상담하거나 필요한 경우 정정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에 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뉴욕시민은 311 로 전화를 걸어 "ActionNYC" 또는 "immigration legal services"라고 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SA 불일치 통지서 및 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차별행위 방지

기록 불일치로 인해 휴직 또는 고용 종료 등 고용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뉴욕시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 NYCHRL) 위반일 수 있습니다. 여러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NYCHRL 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실제 또는 인식상 이민신분, 출신국적 또는 기타 보호계층 자격을 이유로 해당 고용인을 차별하는 것을 그 정도에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령한 불일치 통지서를 고용인 차별 및 보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주는 최대 \$250,000 의 민사상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고용인에게 피해보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은 불일치 통지서와 관련된 NYCHRL 위반사례입니다:

³ □□□□ □□□ □□ 위원 Nancy A. Berryhill □ □□□□□(Educational Correspondence, EDCOR)/□□□ □□ □□ (□, "□□□") □□□□ □□ Jim Acosta □□□ □□ □□ (2019 □ 6 □ 3 □).

⁴ 상동.

□□□□ □□ □□□□

I-9 □ □□□□□□□□□ □□□ □□ □□□□ □□:
<https://www.justice.gov/crt/page/file/1132606/download>

□□□ □□□ □□ □□□ □□ □□□□ □□□ □□ □□:
<https://www.justice.gov/crt/page/file/1080256/download>

SSA □□□□ □□ □□ □□□ □□□□□□:
<https://www.justice.gov/crt/ssa-no-match-guidance-page>

- 한 고용주가 필리핀에서 이민 온 고용인의 이름이 표시된 불일치 통지서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억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해당 고용인을 해고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을 하는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해당 고용인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고용주는 불일치 통지서를 받고 해당 고용인을 해고합니다.
- 한 고용주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리는 내용의 불일치 통지서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영국 출신 이민근로자의 경우 고용인이 제공한 정보에 실수가 있어 이름이 올랐다고 가정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에게 통지서 사본을 전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불일치 통지서에 이름이 오른 여러 다른 멕시코 이민근로자의 경우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고용주는 그들에게 새로운 I-9 양식을 작성하고 근로허가 증명서 원본을 가져오도록 요구합니다. 그 이후 해당 서류를 가져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는 고용을 종료합니다. 고용주가 멕시코 출신의 고용인들에게만 서류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NYCHRL 에 따라 이 고용주는 국적 및 이민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한 고용인이 흑인 고용인이 처한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나중에 고용주가 해당 고용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 불일치 통지서를 받습니다. 차별에 대한 불만제기로 인해 해당 고용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고용주는 불일치 통지서를 해고 구실로 사용합니다. 고용주는 참여가 보장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에 불리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NYCHRL 에 의거 보복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